

학 칙



국제예술대학교
Kukje University of Arts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제예술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본교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예술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국제예술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47(논현동)에 둔다.

제5조(설치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6.14> <개정 2022.06.22.> <개정2024.07.10.> <개정2026.05.27.>

구 분			입학정원	계
계열/학과/전공			주간	
예 계	음 악 과	실용음악	168	375
		스튜디오작곡		
	공연예술과	스튜디오작곡	207	
		연기예술		
		공연기획		
		무대예술		
		뷰티아트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제7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학기)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고, 학사일정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

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4월 28일)

②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과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4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총장이 따로 공고하는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15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9.01.23.>

제15조의 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영향 평가) ① 본 대학의 학과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학허가) 입학(편입학 포함)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2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편입학할 수 있다.

1. 1학년 2학기 편입은 16학점 이상 취득자
2. 2학년 1학기 편입은 32학점 이상 취득자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허가한다.

<개정 2019.01.23.>

제22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삭제><개정 2019.01.23.>

제23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과 인원은 전입·전출 학과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전과한 자는 총장이 정한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지정서류에 의거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장애학생 학점 등록) 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 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 ②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학생의 재학 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학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06.14>

제5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5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창업휴학을 하고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까지 허용한다.

-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병역의무 복무기간으로 정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2분의 1이상 출석한 경우 담당교수가 제시한 별도의 방법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 ⑥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 ②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자퇴) ①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망, 실종 등의 경우는 보호자의 신고로 자퇴처리 한다.

-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8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안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2.04>

-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각 과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④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신설 2022.02.04>

제29조의 2(현장실습 교육과정) ① 현장실습교과는 전공과정으로 운영하며 4주 이상의 단기 현장실습(계절제)과 학기단위의 실습학기제(학기제)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하다. 단,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07.> <개정 2026.05.27>

- ② <삭제>

- ③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전공교육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과정 상호 연계운영의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대학 및 산업체로 하며,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25.02.05.>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실기 등 실기교과의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2.04>

- ② 수업연한 2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7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공, 교양교과는 학과에서 개설한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19.01.23>

- ③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사회봉사 교과목과 직무실습 교과목은 예외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01.23> <개정 2022.02.04>

제33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 안에서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 인 휴학생이 방송 통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08.> <개정2024.07.10.>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2주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④ 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시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01.08>

제34조의 2(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 3(집중수업) ①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 4(원격수업) ① 원격수업의 개설은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1학기부터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은 본 대학 교원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 5(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 6(이동수업) 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을 학교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의 대상, 전공분야, 설치과정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8.06.14.>

제34조의 7(장애 학생 수업지원) ①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06.14.>

제3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지도교

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안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총장의 허가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의 수강신청은 장애유형에 따라 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수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

제36조(출석) ①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학생 가정의 상고 및 학생의 질병,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등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취업한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1.23>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7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 실기시험 등을 병용하되 그 실시(중간, 기말, 수시시험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의 총 수업 시간의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과목의 학점은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 급 이상으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	100 ~ 95	4.5	
A ⁰	94 ~ 90	4.0	
B ⁺	89 ~ 85	3.5	
B ⁰	84 ~ 80	3.0	
C ⁺	79 ~ 75	2.5	
C ⁰	74 ~ 70	2.0	
D ⁺	69 ~ 65	1.5	
D ⁰	64 ~ 60	1.0	
F	59 이하	0	
P	-	불계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 교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삭제>

⑤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성적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제40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학사경고 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졸업 및 수료) ①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2.06.22.>

② 다음 각 호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 <개정 2022.02.04.>
2. 2학년 수료 : 75학점 이상 <개정 2019.01.23>

③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후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졸업연기) ① 제41조제1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자격증취득, 취업준비 및 사회 적응훈련 등의 사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졸업연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1.23>

제42조의 2(학위의 취소) 제41조의 1 내지 3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6.1.12>

제8장 평생교육

제43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의 전문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비정규특별과정)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시간제등록제)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통합반 및 별도반 시간제등록생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③ 모집방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의 성적 등과 당해 연도 본 대학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④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25.02.05.>
- ⑥ 시간제등록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이고, 다른 학교 및 학점인정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80학점 이상일 때에는 당해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⑦ 별도반은 주말 또는 특정기간을 활용하여 4주이상의 집중수업을 할 수 있다.
- ⑧ 기타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활동

제46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학풍을 조성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제5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 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생활 전반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을 통하여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에 관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1.01.08>

제10장 규율과 상벌

제52조(규율) 학생은 학칙과 각종 규율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임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21.01.08>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55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2.04.> <개정 2026.05.27>

제11장 등록금

제56조(등록금) ① 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4.>

② 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02.04.>

제56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8인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9.01.23>

제57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호에 의거 다음 각 호 대로 반환한다.<개정 2022.02.04.>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 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③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1.23>
- ④ 등록금은 결석·징계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8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장 장학금

제59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시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2. 재학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생활이 극빈한 자
- ②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60조(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61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6.14>

제62조(교무위원회)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6.14>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진급·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제위원회) ① 총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1.23>

- 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직 제

제64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는 총장과 교원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둔다.

-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 ③ 직원은 일반행정직, 기능직으로 한다.
-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제65조(직제) ① 본 대학에는 사무처, 교무처, 학생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각 처에는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각 처 및 기타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

제66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02.05.>

제67조(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22.06.22.>

1. 국제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 국제예술대학교 생활관 <신설 2019.01.23.>
 3. 국제예술대학교 부설연구소 <신설 2022.06.22.>
-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개정 절차

제68조(학칙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심의 및 공포) 공고(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70조(보고) 총장은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장 보칙

제71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제예술전공대학”을 “국제예술대학”으로 교명변경)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공연기획전공 신설 및 야간 정원의 전공 별 구분 삭제, 별표 1의 공연기획 예술전문학사 추가 및 실용음악전문학사를 음악전문학사로 변경)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입학정원 학과 단위로 표기, 제17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도로명 주소 적용, 제5조 무대예술 전공 신설 및 입학정원 구분, 제25조(휴학) 군휴학 규정 개정, 별표 1의 무대예술 예술전문학사 추가)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및 별표 1의 클래식전공을 스튜디오 작곡으로 변경)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주간 정원 9명 증원, 야간 정원 삭제)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뷰티아트 전공 신설, 제67조 학칙 개정안 공고일 변경)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연기예술 전공 신설, 제24조 2 장애 학생 학점 등록, 제34조의 6 이동수업, 제34조의 7 장애 학생 수업지원 신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및 제41조(졸업 및 수료)의 졸업 이수학점 변경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34조 감염병 등 위기단계 발생시 운영 사항 신설, 제51조 및 제54조 학생상벌 심의위원회 개정)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9조 교직과정 운영 사항 신설, 제32조 전공 실기 교과의 이수단위 개정 및 최저이수학점 개정, 제33조 군복무중 이수학점 개정, 제41조 수료 학점 개정, 제55조 법조문 반영 개정, 제56조 및 57조 법조문 반영 개정)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학과 입학정원 조정, 제41조 학위명 수정, 제66조 국제예술대학교 부설연구소 신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설치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5학년도 모집을 중지하는 공연예술과 뮤지컬전공 재적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 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졸업하지 못한 소속 재적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고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사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5년 2월 5일부터 부터 시행한다.(제31조 계약학과 신설, 제45조 시간제등록제 신청학점 수정, 제66조 산학협력단 신설 법조문 반영, 제66조 ~ 제70조 조번호 변경)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6년 5월 27일부터 부터 시행한다.(제5조 학과 입학정원 조정, 제29조의 2(현장실습 교육과정) 수정, 제34조의 6(이동수업) 관련 법 조항 수정, 제55조(성희롱 예방) 조문명 수정)

[별표 1]

각과별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

학 과 / 전 공		학위명
음 악 과	실용음악	음악전문학사
	스튜디오작곡	음악전문학사
공연예술과	스튜디오작곡	음악전문학사
	뮤 지 컬	예술전문학사
	연기예술	예술전문학사
	공연기획	예술전문학사
	무대예술	예술전문학사
	뷰티아트	미용전문학사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과(전공)의 전과
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제예술대학교총장 ○○○

학위등록번호 : 국제-○○○○○-○○○○○
(국제-수여연도-일련번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과(전공)
[]학년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제예술대학교총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전 공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국제예술대학교총장 ○○○

학위번호 : 국제-학점-○○○○○-○○○
(국제-학점-수여연도-일련번호)